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2310
------	------

제출연월일 : 2023. 3. 10.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고자 함.

2. 등록단체 현황

(단위: 천원)

1	금천 미래발전 연구회	대표자	고영찬	
		구성의원	고영찬, 윤영희, 정순기, 장규권, 고성미, 엄셋별, 도병두 정재동, 이인식, 김용술	
		설립목적	인구·출산율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천의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발전 모델 개발과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 제시	
		연구주제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23. 3. ~ 2023. 12.	
		연구내용	출산율과 인구감소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사회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는 금천구에는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금천구의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함	
		소요예산	33,000	정책개발비 30,000(부가세 포함)

2	더 금천	대표자	고성미	
		구성의원	고성미, 이인식, 정재동, 엄셋별, 도병두, 고영찬, 정순기 윤영희, 장규권, 김용술	
		설립목적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을 통해 더 나은 금천을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 및 의제 제시	
		연구주제	금천구의 조례등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23. 3. ~ 2023. 12.	
		연구내용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법령체계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정책역량 강화 및 상 위법령 미반영·불일치, 기능상실, 주민의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자 치법규등에 대한 정비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금천구의 자치법규를 정 비하고 의회 기능강화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소요예산	23,000	정책개발비 20,000(부가세 포함)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1. 연구단체명 : 금천미래발전연구회
- 2. 설립목적 : 인구·출산율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천의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발전 모델 개발과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 제시
- 3. 연구주제 :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4. 단체 인적사항

연번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서명	비고
1	행정재경위원회	고영찬		대표자
2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3	복지건설위원회	윤영희		
4	복지건설위원회	장규권		
5	복지건설위원회	고성미		
6	복지건설위원회	엄셋별		
7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식		
8	의회운영위원회	정재동		
9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10		김용술		

2023년 3월 9일

신청인 대표자 : 고영찬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금천미래발전연구회	
연구내용	주 제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목 적	출산율과 인구감소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사회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는 금천구에는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금천구의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미래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활동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총액	금 삼백만원(₩ 3,000,000)	
활동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정책개발비 금 삼천만원(₩ 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023년 3월 9일

신청인 대표자 : 고영찬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1. 연구단체명 : 더 금천
- 2. 설립목적 :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을 통해 더 나은 금천을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 및 의제 제시
- 3. 연구주제 : 금천구의 조례등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 4. 단체 인적사항

연번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1	복지건설위원회	고 성 미		대표자
2	복지건설위원회	이 인 식		
3	의회운영위원회	정 재 동		
4	복지건설위원회	엄 섯 별		
5	행정재경위원회	도 병 두		
6	행정재경위원회	고 영 찬		
7	복지건설위원회	윤 영 희		
8	복지건설위원회	장 규 권		
9	행정재경위원회	정 순 기		
10		김 용 솔		

2023년 3월 9일

신청인 대표자 : 고 성 미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더 금천	
연구내용		주 제	금천구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목 적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법령체계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정책역량 강화 및 상위법령 미반영·불일치, 기능 상실, 주민의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정비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금천구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의회 기능강화와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연구활동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총 액	금 삼백만원(₩ 3,000,000)	
활동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정책개발비 금 이천만원(₩ 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023년 3월 9일

신청인 대표자: 고성미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금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원 1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제4조(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회 의장(이하“의장”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심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배분·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연구단체의 활동 및 존속기한) ①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12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